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SU-Innovation Academy]

플립러닝 콘텐츠 제작 제안요청서

2020. 10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목 차]

I. 사업안내

1. 개요	2
2. 사업 추진 배경	2
3. 사업내용	2

II. 용역수행지침

1. 제안요청과제	4
2. 개발요구사항	5
3. 계약사항	8
4. 보안사항	8

III.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절차	10
2. 제안 자격	11
3. 제안 조건	11

1. 개요

- 1) 사업명 : (혁신) 플립러닝 콘텐츠 제작
- 2) 사업기간 : 2020년 12월까지 (상기 일정은 본 사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4) 사업예산 : 91,000,000원(일금 구천백만원정, VAT포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작비용을 포함함 (부가세, 수수료, 교안 제작, 교수설계, 현장 촬영비, 자막처리, 품질검수 및 심의료, 저작권료, 품질인증비, 납품을 위한 HDD(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일체의 경비)

2. 사업 추진 배경

- 1)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지식 나눔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온라인 공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3) 온라인 교과목 콘텐츠 제작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4) 플립러닝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및 토의를 진행하는 융합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1) 개발교과목 정보 (개발 교과목은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번호	교과목명	소속	교수
1	빅데이터처리	컴퓨터공학부	김성완
2	캡스톤디자인	아트앤디자인학과	이장미
3	전기전자회로 및 실습	IT융합공학과	류한철
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문학의 접근	신학과	최경천
5	프로그래밍언어Ⅱ	경영정보학과	최민석
6	하이테크마케팅	경영정보학과	최성욱
7	정보기술과 혁신	경영정보학과	최성욱

※ 개발주차는 15주이며, 1시수 25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2) 위 과목의 기획 및 교과목 담당 교수 선정은 삼육대학교 SU-Innovation Academy에서 담당하며, 선정된 업체는 강좌기획, 교수설계, 교안제작, 콘텐츠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검수 등을 담당하게 됨

기간	내용
2020년 12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기획 및 교안 개발 작업 ○ 콘텐츠 촬영을 위한 스토리보드 설계
	<p>콘텐츠 개발(촬영/편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콘텐츠 촬영 (영상 및 디자인) ○ 15개 콘텐츠 편집 (영상 및 디자인) ○ 가편집 검수 ○ 수정 및 보충 촬영
	<p>콘텐츠 검수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사전 검수 ○ 콘텐츠 품질 검수 ○ 검수결과 수정/보완 ○ 최종 승인

1. 제안요청과제

1.1 개발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교수	개발분량
1	빅데이터처리	김성완	· 15주차(1주차 당 25분 이상 분량)
2	캡스톤디자인	이장미	
3	전기전자회로 및 실습	류한철	
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문학의 접근	최경천	
5	프로그래밍언어 II	최민석	
6	하이테크마케팅	최성욱	
7	정보기술과 혁신	최성욱	

- ▶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포함한 15주차 강좌를 제작하여야 함
- ▶ 주당 1차시 분량으로 15주차 분량의 총 15개 강좌를 제작하여야 함
- ▶ 15주차 분량의 웹·모바일 기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함
- ▶ 동영상 기반형으로 개발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다양한 동영상 기법을 활용한 학습 내용 구성
 - 학습 내용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 사용 및 학습 내용 형태의 다양한 구성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1.2 추진일정(안)

업 무	일 정
제안서 평가	2020년 10월 초
계약 체결	2020년 10월 말
콘텐츠 개발 착수	2020년 11월 초
60% 이상의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중간 검수	2020년 11월 말
최종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최종 검수	2020년 12월 말
최종 콘텐츠 납품	2020년 12월 말

2. 개발 요구사항

2.1 개발 지침

1) 일반 지침

- ▶ 개발 업체는 본 개발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본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사적 지원을 포함함
- ▶ 콘텐츠 촬영 장소는 삼육대학교 교내에서 진행하며, 촬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은 해당 업체에서 공급해야 함
- ▶ 콘텐츠 개발 기간 동안 PM(Project Manager)은 교내에 상주하며 교수자 관리, 교수설계, 촬영 시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함
- ▶ 콘텐츠 개발물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 및 매체 활용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개발업체는 계획된 개발진행 단계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 및 내용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 개발업체는 내용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과목별 내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 및 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함
- ▶ 개발업체는 교과목별 1차시 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 계약업체는 플립러닝 콘텐츠 제작 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정별로 본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본교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 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2) 세부 지침

- ▶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하여야 함
- ▶ 촬영 시 교수자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직접 컨트롤 혹은 모니터 하도록 하여 강의진행 및 내용전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개발업체는 진행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해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

공할 수 있어야 함

- ▶ 개발업체는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수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 기간 동안 PM이 교내에 상주하며 교과목의 교수설계 및 교수자 일정 변동에 맞출 수 있도록 함
- ▶ 본 용역사업은 강의콘텐츠의 기획, 연출, 구성(안), 교수설계, 교안제작, 스토리보드 작업, 녹음, 음악, CG제작, 촬영, 가편집, 종합편집, 검수, 플랫폼 탑재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함
- ▶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로 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화면 중간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다양하게 인서트로 활용
- ▶ 학습 화면은 다양한 화면 전환으로 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구성하고, 추후 모바일 등을 고려하여 화면을 넓게 활용
-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교수자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현장 촬영도 실시함
- ▶ 촬영 시 동영상, 크로마키, CG, 전자칠판 등 여러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며, 고화질의 동영상 및 가독성 높은 화면을 제시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다양한 영상 구현 방법 제안)

3) 검사와 검수

- ▶ 제작된 영상 및 콘텐츠에 대한 귀책사유는 계약업체에게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구성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교과목별 검수 인력을 본교에서 지정 및 요청할 수 있음
- ▶ 하자 또는 오류 발생 시 통지를 수령 또는 발행(해당되는 경우)한 후 10일 내에, 관련 강좌, 콘텐츠, 기능향상수단의 대체물 또는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언제 하자가 보완될지에 대한 예상일을 알리고, 상세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2.2 개발 상세

1) 사업보고

- ▶ 제안사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사항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삼육대학교 수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 협의 함.
- ▶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각 과정별 작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내 용
프로토타입 산출물	• 문서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안, 강의교안(원고), 회의록 등 • 동영상 파일(웹, 모바일) 및 원본소스 •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제출
최종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전반 - 기획안, 강의교안(원고), 스토리보드, 회의록 등 - 저작권 출처 표기 리스트 - 동영상 파일 - CG, BGM, 인트로, 오디오, 자막이 삽입된 최종본 • 최종산출물은 서버 탑재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제출

2) 제작물 등에 대한 관리

- ▶ 본 사업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삼육대학교에 귀속함
- ▶ 개발업체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물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배포, 송신, 대여 등의 일체)은 본교에 귀속되며 본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 개발된 콘텐츠의 외부 누출, 무단 복사/편집,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함
- ▶ 계약업체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계약업체가 져야함

3. 계약 사항

3.1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3)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4)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5)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6)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 7)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본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2 계약종료 후 조치

- ▶ 계약 종료 후라도 하자 또는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할 시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기간은 최종 납품 후 1년을 무상으로 함
- ▶ 하자보증 기간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및 단순오류사항 등의 결함발생 시 문제 해결이 완료 될 때까지는 기술을 지원해야 함

4. 보안사항

-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1. 사업자 선정절차

1.1 선정절차

-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접수 → 낙찰업체선정 → 사업자협상 및 계약체결

1.2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2) 제출방법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불가)
 -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1.3 사업자 선정 방법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함

1.4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2) 기술평가
 -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우수한 용역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제안서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함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4)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 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아서 현재 그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3) 본 대학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대학의 선정방식과 평가 방식에 이의가 없는 업체
- 4) 입찰 참가 시 삼육대학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5) 제안 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으로 아래 각 호를 충족하는 업체
 - 최근 2년 이내 재무제표상 자본금 잠식이 없는 사업자
 -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사업자
 - 개발기간동안 PM(Project Manager) 교내파견이 가능한 사업자
 - 교육관련 개발물 특허보유 및 프로그램등록증과 저작권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e러닝 전문기관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기술관련 GS 인증업체
 -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서울, 경기(인천 포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
 - 정부과제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및 공공기관의 유사 실적증명서(단일 사업 규모 3천만원 이상의 실적) 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실적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없을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 조건

3.1 일반 사항

- ▶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에 대하여 삼육대학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고, 사업완료 즉시 제반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안사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해 변동 없이 계약내용의 사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삼육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삼육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등의 분쟁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삼육대학교의 소유로 하고, 계약당사자는 삼육대학교의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안된다.
- ▶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삼육대학교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육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하여야 한다.
-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3.2 제안 시 전제조건

-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 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분쟁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를 포함)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 재발, 유지보수 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사(社)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